

비대면 투자자문계약권유 및 상품설명서

본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이하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한다)를 참고하여 투자자문담당자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자문서비스 및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7조 등에 따라,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회사가 고객님께 투자자문에 대한 절차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투자자문의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고객님께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자료에 기재된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상품

①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투자판단의 자문을 합니다.

1. 투자자문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자문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 업무

② 회사는 ①에서 같이 투자판단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본 계약서에 따른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자문서비스
2.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의 결과 보고
3.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자문에 응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의 금융상품으로 합니다.

1.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이하 'ETF'라고 한다.)
2.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④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문 서비스의 절차 및 지침

①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투자자문재산의 운용, 그 밖에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 등을 분석하고, 고객의 투자성향 범위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참고하여 운용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③ 투자자문재산이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기 위해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설된 고객명의의 증권사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회사가 고객에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한 최소 운용금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④ 고객은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자문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다.

⑧ 고객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를 참고하여 운용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에 따른 고객자산의 자문현황, 투자정보, 상품정보 등 투자자문서비스 관련정보를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3. 투자자문서비스의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자문에 응한다.

4. 투자자문담당자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문담당자

성명	김인철
학력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퀸텟투자자문 (2025.1월~현재) • 키움투자자산운용 (2020.4월~2025.1월) •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2016.5월~2020.4월) • State Univ. of New York – Stony Brook 경영/경제학 학사 (2006.05)

* 위 투자자문담당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을 운용함.

5.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 ② 본 투자자문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참고하여 운용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과 회사간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포함해 임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6. 회사와 고객의 책임과 의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문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문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 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투자자문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차익거래 등 투자자문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문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자문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문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자문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2.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문재산에 유리한 경우
 4. 환매조건부매매
 5.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인 경우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자문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자문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자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자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문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자문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1. 투자자문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자문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자문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자문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문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5. 투자자문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자문담당자를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자문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9. 그 밖에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투자자문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고객은 전자 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7.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재산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수수료를 부과하며 투자자문수수료 일할 계산 적용시점은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최소 운용금액이 충족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전략	기본 수수료	성과 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채권액티브 EMP 1호 전략	0.62%/월(0.744%/년)	없음	없음
배당 EMP 1호 전략	0.62%/월(0.744%/년)	없음	없음

③ 회사는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운용되는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본 수수료를 계산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동의한 방식으로 투자자문수수료로 청구한다. 단, 수수료 청구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미징구 기본 수수료를 해지시점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청구하여 징구 합니다.

④ 고객계좌에서 투자자문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고객계좌에 수수료 납부를 위한 현금을 추가 입금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고객안내가 이뤄진 시점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해서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정이율을 적용해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비용과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등은 고객이 부담 합니다.

8. 투자자문재산의 평가기준 및 통보방법

① 자본시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문 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기준을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9.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① 투자자문계약의 체결은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고객명의 계좌의 개설이 완료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계약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운용은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한 최소 운용금액이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시점부터 개시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안내하거나 전자서면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기간의 종료일
2.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
3. 제2호에 따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

④ 고객이 제3항에 따른 안내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 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⑥ 고객은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을 통해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모델포트폴리오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투자자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투자자문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유자산을 매도하여 투자자문재산을 현금화한다. 단,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자산에 대한 매도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의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회신하지 않는 경우
3. 로보 어드바이저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기 위해 회사에서 정하고 고객에게 안내된 계약 유지금액에 미달한 경우
4. 고객의 투자성향이 변경되어 현재 투자 종인 모델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⑩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⑫ 제 1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⑬ 회사는 제 1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⑭ 회사는 회사의 영업점에 계약서를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첨 1]

회사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① 회사 임원 현황

성명	직위	주요 경력
송성환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바이브컴퍼니(舊 (주)다음소프트) 전 대표이사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한덕희	기타비상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퀀팃 대표이사 (現) • CK골디락스 자산운용 CTO • Haafor Research svp
정승재	사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O(최고투자책임자) • 경찰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증권운용팀 운용역 • 한화손해보험 자산운용본부 이코노미스트 및 운용역 •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애널리스트
김경렬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現) • K&L 태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 상기 임원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② 대주주 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퀀팃	957,143	100	최대주주 대표이사: 한덕희

[별첨2]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1) 투자성향별 적합한 상품 위험 등급

투자성향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공격투자형	투자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가능						
균형투자형			투자가능				
안정투자형					투자가능		
안정형						투자가능	

- 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은 매우높은위험(1등급)부터 매우낮은위험(6등급)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본 투자자문계약은 균형투자형 이상의 투자성향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2) 투자자문 모델 포트폴리오의 세부 유형

세부유형	위험등급	예상 위험수준	가입가능한 투자성향
모험모델	1등급 (매우높은위험)	주식 또는 채권 관련 ETF와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할 수 있어, 파생상품 투자위험과 레버리지 투자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높은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공격투자형
성장모델	2등급 (높은위험)	주식 및 주식 관련 ETF 등 위험자산 비중이 60% 이상인 모델 포트폴리오이며, 주식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주가지수나 시장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음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중립모델	3등급 (다소높은위험)	채권 및 채권 관련 ETF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이 40% 이상인 모델 포트폴리오이나, 이자율에 따라 채권 가격에 불리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투자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균형투자형

- 위험자산 : 회사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를 바탕으로 매우높은위험(1등급)과 높은위험(2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주식형 ETF, 대체투자 ETF, 리츠 ETF, 외환ETF 등이 해당

투자자문계약 상품설명서

퀀팅투자자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사필 제2025-007호(2025.08.12 ~ 변경시까지)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자문서비스(금융상품)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투자자문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계약명 : 배당 EMP 1호 투자자문계약

투자위험등급 3등급 이상 (다소높은위험)	<p>회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위험(1등급)에서 매우낮은위험(6등급)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p> <p>본 계약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자문담당자가 분산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문계약으로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다소높은위험) 이상으로 분류했으며,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균형투자형 이상의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위험자산의 최대 투자비중에 따라 세부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과 이에 적합한 고객 투자성향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	---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본 상품은 투자자문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문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의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에 대한 자문의 응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본 투자자문계약	특정금전신탁	공모펀드(주식형)
운용방법 결정 주체	투자자문업자	고객	집합투자업자
운용방식	개별계좌운용	개별계좌운용	통합운용(집합운용)
운용지시 및 참여	가능	가능	불가능
운용자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운용대상 자산 지정	집합투자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 주식에 투자

■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시장의 주가지수나 전체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내 보유 개별 종목 및 자산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주가지수나 시장 수익률을 따라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개별 편입 자산의 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재산의 총 수익률이 음의 수익률인 경우에도 개별 편입 자산으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의 비용과 유관기관 비용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은 투자자문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본 계약을 운용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의해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해지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투자자문재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므로, 개별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과 투자 국가의 이자율 및 환율,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투자대상 ETF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므로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개별 이슈 (거래정지 등), 국내외 거래소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유자산의 매도 및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상담 연락처

- 문의사항이나 민원사항 발생시 당사 고객센터(02-3775-0234)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 또는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신청 : 02-2003-9426, 홈페이지 <http://www.kofia.or.kr>
 - 2)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신청 : 02-1577-2172, 홈페이지 <http://sims.krx.co.kr>
 - 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분쟁조정포함)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http://www.fcsc.kr>

■ 투자자문계약 주요 내용

계약명	배당 EMP 1호 투자자문계약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이상 (총 6단계 중 3번째 높음)
투자대상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 60%이상, 단 채권 관련 ETF에 전체 투자자산의 40% 이상 투자 2)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 40% 미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년 단위 자동 연장, 중도해지에 별도 제한 없음)
운용목표와 운용방법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에 기반해 투자자문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운용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및 해외시장에 투자되는 주식, 채권, 리츠 등의 ETF들 중 배당 성 향이 강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기반으로 AI와 퀀트모델링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알고리즘 을 사용, 시장상황에 자동으로 대응하며 변동성과 최대손실율을 낮추면서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
최소운용금액	500만원 * 단, 회사가 사전에 공지하는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기간에는 최소운용금액이 한시적으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조건, 적용 기간 및 대상은 회사 홈페이지, 영업점 또는 가입 채널을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
입출금 제한	추가입금 가능 출금 제한 없음 (단, 시장상황이나 편입 종목의 개별 이슈 등의 사유로 현금화를 위한 매도 등이 출금이 지연될 수 있음)
수수료율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합의함 중도해지 또는 환매 수수료 없음 기본 수수료 : 0.62%/월 (0.744%/년)
수수료 산정방법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최소운용금액이 충족 되어 운용되는 시점부터 일별 계좌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일 산정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계좌에서 출금. 단,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고객이 투자자문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징구 수수료를 고객계좌에서 징구
기타비용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운용되는 ETF 거래비용 등은 해당 증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증권사에게 귀속
해지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해지시 보유자산 그대로 유지하기 를 원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주요 투자위험

원리금 손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로 인한 손실책임은 투자 본인에게 있음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에 따라 운용 •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시장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영향 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들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
유동성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 종목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 증가, 매매지연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신용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에서 투자하는 종목들의 고유위험(영업환경, 재무실적, 신용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ETF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환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가 투자하는 시장이 해외시장일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므로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기타 위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래가 중지될 위험이 있음 • 투자대상 ETF가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정부정책의 변화, 세제 변화 등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에 따른 투자자문서비스 운용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ETF의 기초자산이 롤오버 비용 등으로 기초자산을 대표하는 실물자산의 현물가격을 추종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에 관한 안내

- 고객님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적합성원칙) 제 3 항, 제 18 조 (적정성원칙) 제 2 항, 제 19 조(설명의무)제 1 항 · 제 3 항,제 20 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 1 항 또는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위법계약 해지 기간 : 아래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 가.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나.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과 최초로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단,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방법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를 기재한 문서를 당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소 :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여의도동) 13층

주식회사 퀸텟투자자문 서비스운영본부

3)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의 효과 위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를 요구하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투자성상품의 경우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의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해지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이 반환합니다

본 서비스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설명서, 약관, 계약권유문서, 계약서 등의 계약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 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